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의안 번호	1998
----------	------

2020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 2020년 10월 16일
- 다. 회부일 : 2020년 10월 26일
- 라. 상정일 : 제29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12월 1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대현 평생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유치원, 학교 등에 한정된 사용료 감면 혜택을 대안교육기관까지 확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평등한 교육권 보장하고, 신규 청소년시설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청소년시설 사용료 등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설대관 사용료 감면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함(안 제8조).

- ※ 대안교육기관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은 교육기관으로,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서울시에 사전 신고를 마친 기관을 말함.
- 여성근로청소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운영하였던 임대아파트의 운영이 종료 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9조).
 - 2021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인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를 청소년 시설에 포함하고, 서대문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가 마포구로 이전함에 따라 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소지를 현행화함(안 별표 1).
 - “직업체험센터”的 명칭을 “미래진로센터”로 변경함(안 별표 1).
 -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결과
 - '20. 8. 20.~9. 9.: 의견 없음
 -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 청소년시설 신설 및 명칭 변경, 여성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삭제
 - '20. 9. 2.~9. 22.: 의견 없음
 -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 기간 연장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대관 사용료 감면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안 제8조제2항제9호), 신규 청소년시설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며(안 별표1),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시스템의 감면기간을 연장(안 부칙 제2조)하고자 제출되었음.

* 안 제5조는 중복된 조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5조(운영의 원칙) ① <u>운영자는</u>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의 원칙) ① <u>운영자는</u> ----- ----- -----.

가. 대안교육기관의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안 제8조제2항제9호)

- 안 제8조제2항제9호는 대안교육기관이 청소년시설이 사용할 때 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시설대관 사용료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용료 등) ① (생 략)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8. (생 략)	제8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9.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u>고등학교가</u> 비영리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 행사를 주최하거나 체육활동을 위하여 별표 1의 시설을 대관하는 경우 : 시설 대관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	9.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u>고등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기관을 말한다)이</u> 비영리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 행사를 주최하거나 체육활동을 위하여 별표 1의 시설을 대관하는 경우 : 시설 대관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 청소년시설 사용료의 감면 범위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본 조례’) 제8조에서 각각 차등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청소년시설 감면 범위 〉

조항	제1호~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감면내용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청소년 등	가입여성	다동이가족 청소년 (3자녀 이상)	비영리목적 대관	소상공인간편 결제시스템 결제 (제로페이)
감면율	100%	10%	30%	50%	10% ('20.12.31.)

- 학교 등에서 청소년시설을 사용하여 감면한 규모는 3년 평균 연간 2천 3백만원 수준이고,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수 대비 대안교육 기관의 수는 적은 규모인바, 시설대관에 따른 청소년센터 감면손실 금액의 증가는 적을 것으로 사료됨.

〈 최근 5년간 감면손실금 현황 〉

(단위: 천원)

연도	청소년센터 감면손실 금액					보전 지원금	미보전액	보조율
	계	저소득	가임여성	다등이	시설대관			
2019*	1,119,093	578,881	298,351	221,195	20,665	1,032,234	86,859	92%
2018	1,046,454	553,866	259,756	206,140	26,691	897,208	149,246	85%
2017	1,089,376	566,519	286,092	214,904	21,860	802,178	287,198	74%
2016*	1,087,116	618,623	278,058	189,213	1,222	836,439	250,677	77%
2015*	1,066,251	622,407	267,195	176,648	-	946,131	120,120	89%

* 2015, 2016년에는 위탁운영 지원예산 범위내에서 보조금 추가지원 하여 보조율 상승

* 2019년 제로페이 감면 손실보전 예산액 집행잔액 범위내에서 사용료 감면 손실분 추가지원에 따른 보조율 상승

- 청소년시설의 감면은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따라 신고한 대안교육기관에 한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재정적, 현실적 한계 등으로 인해 신고한 대안교육기관의 감면을 우선 지원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평등한 교육여건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받는 주체는 ‘교육기관’이 아닌 청소년 개인으로 보는 것이 법리(「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합당하다고 사료되는바, 평생교육국은 서울시 모든 청소년들이 같은 교육여건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발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여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 제 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의 규정 삭제

- 안 제9조는 광명시에 위치한 시립 근로청소년복지관(이하 ‘본 복지관’)의 폐관에 따라 조례의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u>제9조(임대아파트의 임대료 등) ①</u></p> <p><u>운영자는 청소년시설에 포함된 노동청소년 임대아파트 입주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영구임대주택의 법정영세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법정영세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적용한다.</u></p> <p><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의 주거자립 및 임대아파트의 운영효율화를 위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30%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다만, 납부자의 사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u></p>	<p><u><삭 제></u></p>

- 본 복지관은 1982년에 개관하여 구로구 공단지역의 여성청소년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되었으나, 시대변화에 따라 여성청소년 근로자가 감소하여 복지관의 당초목적을 상실하여, 서울시는 매각계획을 수립(2013년)하고, 시설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2017년 폐쇄(2017.10.16.)하였음.

〈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현황 〉

- 소재지 :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740번지
- 개관일 : 1982년 12월 17일
- 시설규모 : 대지 $59,641\text{m}^2$, 건물 $25,835\text{m}^2$
 - 근로청소년복지관 : 지하2층, 지상3층(강당, 강의실, 상담실, 심리검사실)
 - 여성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 9개동 450세대(42.9m^2 4개동, 49.6m^2 5개동)
- 도시계획 : 시설(공공청사), 용도지역(제1·2종 일반주거지역)

- 시설 폐쇄 이후 지역주민의 요청으로 본 복지관의 운동장의 관리를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하여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본 복지관 부지 내 국유지의 관리위임을 받은 광명시는 본 부지의 문화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본 부지 매각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도시계획시설 폐지) 등은 지연하고, 서울시가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변상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해 왔음.

〈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운동장 개요 〉

- 규모 : 운동장 부지 총 $17,300\text{m}^2$ (5,400평)
 - 축구장(1면) : $105\text{m} \times 68\text{m}$, 풋살장(2면) : $25\text{m} \times 35\text{m}$
- 시설 : 야간조명탑, 관람석(1,500석), 본부석, 주차장 및 녹지공간
- 운영단체 : 금천구청(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위임 운영(2018.3월~)
 - 근무인력 : 6명(운영총괄 1명, 보안·경비 2명, 사회복무요원 보조 3명)

- 이후 강남권을 국제업무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국제교류복합지구 : 강남구 삼성동~송파구 잠실동, 1,992,394m²) 중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등 잠실운동장 일대 복합단지(스포츠, MICE 등) 조성을 위해 잠실운동장의 국유지와 본 복지관의 시유지를 상호 교환(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 2020.9.4., 서울특별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위해 교환 절차가 추진되고 있어, 본 복지관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 본 복지관은 기능을 상실하였고, 부지교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의 삭제는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본 복지관 시유지와 잠실운동장 국유지 교환 개요 〉

○ 위치

- 취득재산 : 송파구 잠실동 10 [잠실운동장]
 - ※ 소유자 기획재정부 59.35% 서울시 40.65%
- 처분재산 :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740 외 7 [광명근로청소년복지관]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98-1 외 3 [가락 1·2 공영주차장]
 - 서울시 강서구 외발산동 425 [강서면허시험장]

○ 용도 : [취득재산] 잠실운동장 일대 스포츠·MICE 복합단지 조성

○ 사업기간 : '17.2월 ~ '20.10월

○ 소요예산 : 비예산

○ 사업규모

- 취득재산 : 토지 80,627.43m² [소유자 : 기획재정부]
- 처분재산 : 토지 123,260.50m² [소유자 : 서울시]
 - 건물 35,720.00m² [소유자 : 서울시]

○ 기준가격 명세

구분	항목	면적(m ²)	공시지가(천원)	기준가격(천원)	참고사항
취득	토지	80,627.43	378,948,921	378,948,921	1필지
처분	토지	123,260.50	419,832,460	419,832,460	13필지
	건물	35,720.00		13,488,306	12동

다. 신규 청소년시설 등록 및 명칭변경 청소년시설

- 안 별표1은 신규 건립시설(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 위치가 변경된 시설(서대문 → 마포)과 명칭이 변경된 시설(직업체험센터 → 미래진로센터)을 별표1에 반영하고, 안 부칙 제2조에 위탁 협약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별표 1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제4조 관련)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제4조 관련)					
구분	자치구	시 설 명	기 능	위 치	구분	자치구	시 설 명	기 능	위 치	
1. 청소년 활동 시설	② 청소년특화시설				1. 청소년 활동 시설	② 청소년특화시설				
	(생 략)					(현행과 같음)				
	영등포구	시립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생 략)	(생 략)		-----	시립청소년 미래진로센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생 략)					(생 략)				
	노원구	시립노원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생 략)	(생 략)		-----	시립노원청소년 미래진로센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기타 청소년 시설	<신 설>				3. 기타 청소년 시설	양천구	시립양천청소년 음악창작센터	청소년 음악 창작활동 지원	신정동 1 290-6외4	
	(생 략)					(현행과 같음)				
	서대문구	시립서대문인터넷중독 예방상담센터	"	가좌로134		마포구	시립마포인터넷중독 예방상담센터	청소년인터넷 예방 및 상담	월드컵로 212	
(생 략)					(현행과 같음))					

-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는 2022년 개소예정으로 개소 준비와 민간위탁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 개관 이전에 별표1에 등록하고,
 -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는 직업이라는 개념보다 진로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며,
 - 마포구로 이전한 서대문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의 명칭을 마포인터넷중독 예방상담센터로 변경하기 위하여 별표1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 본 조례 제10조는 별표1에 명시된 시설에 한정하여 권한의 위임과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현황에 맞는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설치) 이 조례에서 설치 ·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라. 제로페이의 연장

- 현행 제8조제2항제10호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유효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더 연장하기 위해 조례 제7117호 (2019.5.25.)의 부칙 제2조 규정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려는 것임.
- 제로페이의 감면은 당초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제290회 정례회(2019. 11. 29.)에서 감면기간을 2020년 말일까지 재연장하기 위해 조례 제7117호(부칙)를 개정하였으며, 또 다시 감면기간을 2021년 말까지 연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부칙 < 제7117호, 2019. 5. 2.>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8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u>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u>	부칙 < 제7117호, 2019. 5. 2.>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 ----- 2021년 12월 31일-----.

- 제로페이의 연장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 내년까지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 청소년시설은 소상공인이 아니어서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없고,
 - 2021년부터 제로페이도 1.5%의 수수료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줄어들 것을 보이며,
 -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사용료 감면을 제공하고, 시설의 감면손실분을 충당하기 위해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여, 소상공인과 관련이 없는 청소년 시설에서의 제로페이 사용에 대한 감면연장에 대해 효율성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마지막으로, 제로페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시행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서울시만의 자치사무로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는바, 서울시의 재정으로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국가와 서울시가 그 부담을 분담하기 위한 평생교육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제로페이 사용료 감면의 개요 〉

- 대상시설 : 청소년시설 27개소(수련관21, 유스호스텔2, 특화시설 4)
- 내용 : 사용료 등 제로페이 결제 시 10% 감면 적용
- 근거 : 조례 제8조 제2항 제10호
- 감면기간 : 2019.5.2. ~ 2020.12.31.
- 적용방법
 - 이용 프로그램 수와 상관없이 제로페이로 결제 시 사용료 10% 감면
 - 다른 감면규정과 중복 시 미적용
 - 사용료 감면 한도액 : 최대 20만원까지 감면 적용
- ※ 이용 프로그램 개수와 상관없이 제로페이로 결제 시 사용료 10% 감면
예) 이용자가 2개 이상 프로그램을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 할인 적용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